

붙임1

산불 피해고객 지원내용 요약

구분		지원대상	지원내용	신청 및 적용시기	지원지역
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		특별재난지역 내 거주주택 산불피해 고객	원금상환 3년 유예 (직계존·비속 거주주택에 피해를 입은 경우도 유예)	피해발생일로 부터 1년 이내	특별재난지역
		산불피해 고객	조기상환수수료(최고 1.2%) 전액 감면 (거주주택 이외 논·밭 등 다른 자산의 피해를 입은 경우도 가능)	상시	특별재난지역 및 영월 등
주택보증 (개인)	개인보증 전체	특별재난지역 내 보증대상주택 산불피해 고객	보증사고처리(압류 등 조치) 기한(1개월 → 4개월) 연장 사고정상화 시 연체보증료 전액 및 추가보증료 가산요율(3%p) 감면	'22년 말까지	특별재난지역
	전월세보증		신규주택 임차 시 추가보증 허용		
	건축, 모기지 신용보증(MCG)	특별재난지역 내 소유주택 산불피해 고객	신용평가 우대(보증신청 거절 없도록)		
주택연금		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산불피해 고객	주택연금 지급정지 1년 유보(추가 연장 가능) 중도해지 시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	피해사실 확인 시 상시	특별재난지역 및 영월 등
주택보증 부실채권			산불피해 부실채무고객	개인보증 상각채권 채무조정 시 원금 최대 10%p 추가감면(최대 70% 한도)	상시
		특별재난지역 내 거주 중인 부실채무고객	채무조정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 (최대2년)	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	특별재난지역

※ 피해고객은 지자체 등에서 발급하는 '피해사실확인서'로 입증

※ 공사 관할지사 : 울진(경북지사), 삼척·강릉·동해(강원동부지사), 영월(강원서부지사)

※ 특별재난지역 : 울진, 삼척, 강릉, 동해